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하여
(외무대신 담화)

2018 년 11 월 29 일

1. 일한 양국은 1965 년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일한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핵심인 일한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무상 3 억 달러, 유상 2 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함(제 1 조)과 함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함(제 2 조)을 정했으며 그간 일한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월 30 일의 판결에 이어 금일 29 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三菱重工業株式会社)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불 등을 명하는 2 건의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들 판결은 일한청구권협정 제 2 조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기업에 더욱 부당한 불이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1965 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일한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본의 상기 입장을 다시금 전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청합니다.
4. 또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라도, 계속해서 국제 재판과 대항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참고]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 년 12 월 18 일 발효)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